

##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
전문개정	1999. 10. 7	조례 제1170호
개정	2000. 2. 29	조례 제1188호
	2003. 8. 14	조례 제1313호(도시계획조례)
전문개정	2007. 8. 13	조례 제1545호(제명개정)
개정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 4. 15	조례 제1767호(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전부개정	2015. 7. 31	조례 제2097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5. 9. 30	조례 제2118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7. 12. 29	조례 제2330호(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2. 8. 2	조례 제2868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원관리청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2. “공원”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
3. “녹지”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광명시 도시공원, 공원시설, 녹지, 도시녹화 등에 적용한다.

### 제2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· 관리

제4조(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

##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. 다만,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한다.
2.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·개량사업
3. 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

제5조(공원의 설치·관리)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. 다만,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. 다만,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가학산근린공원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」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, 광명동굴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## 제3장 공원 및 녹지의 점용

제6조(공원점용허가)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(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)된 공원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공원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29>

1.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(공원 안에서 농업·임업·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)

2.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

가. “창고시설”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, 냉동·냉장창고, 하역장의 목적일 것

나. “식물관련시설”은 벼섯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

다. 「지적법」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

라.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

3. 영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

가.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

나.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

4.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·재축·증축 또는 대수선

가.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「건축법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

나.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

- 다.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(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- 라.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, 상·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

#### 5. 노외주차장

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·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

#### 6.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

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

#####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
  - 2.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·차폐·수목·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
  - 3. 오·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
  - 4.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「지적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.
  - 5.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
  - 6. 그 밖에 「건축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6>

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,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 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
3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

제7조(녹지점용허가) ① 법 제38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9. 26>

1.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(일부 조성이 완료 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)된 녹지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상 제1 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써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
4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
2.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
  - 가. 「건축법」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. 다만,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  - 나.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

간에 한할 것

- 다.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,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도법」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)로 점용 허가할 것
- 라.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. 다만, 현지여건 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마.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. 다만,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바.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
- 사.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
- 아.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
- 자.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「지적법」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
3.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
-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(도로, 철도 등)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 상 미 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
-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용허가의 기간)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점용시설,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.

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점용시설의 철거 등)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점용물의 관리)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, 점용허가 기간, 점용면적,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/100 이상 증가한 때에는 「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3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,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.
2.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,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.

##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
③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면적이 점용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 후 정산금을 환불한다. <개정 2015. 9. 30>

제12조(점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2.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3.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원상회복)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시공원의 경관·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14조(전대 등의 제한) 이 조례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에 관한 권리 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##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

제15조(설치 및 기능) 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광명시의회 의원 1명

2. 도시공원 · 녹지 · 도시계획 · 경관 · 조경 · 산림 ·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22. 8. 2>

제17조(위원의 위촉 ·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

- 제1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 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팀장이 된다.

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,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.

제2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2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

제23조(안전감시원) ①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에 서 정한 것 중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(이하 “감시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1. 어린이놀이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2. 시설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3. 그 밖에 안전감시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

제24조(역할) 감시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

2.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각종 조사 업무의 지원
3.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

제25조(수당) 감시원 회의에 출석한 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2015. 7. 31 조례 제2097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, 점용허가를 신청한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15. 9. 30 조례 제2118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29 조례 제2330호,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2. 8. 2 조례 제2868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점 용 료 (제11조제1항 관련)

점 용 대 상	점 용 료	비 고
1. 전주, 전선, 변전소, 전기통신설비,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/100	
2.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, 전기관, 통신관, 송유관, 배수관, 가스정압시설, 공동구, 전력구, 통신구, 암거등 이와 유사한 시설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3. 도로, 교량, 철도, 궤도, 노외주차장, 선착장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8/100	
4. 농업목적 취수시설, 생활용수공급목적 배수시설,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5. 경찰관파출소·초소·등대 및 표지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6. 방화용 저수조·지하대피시설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7. 군용전기통신설비·축성시설, 그 밖에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8. 농업·임업 자가 생산용 관리용 가설건축물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9. 자기토지에 설치하는 사무소, 창고시설, 온실, 온실과 유사한 것(「건축법」상)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10.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가설건축물	감면	
11. 비상재해 시 이재민 수용위한 가설공작물	감면	
12. 재해 예방 또는 복구 위한 공작물	감면	
13. 경기, 집회, 전시회, 박람회, 공연을 위한 단기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/100	
14. 도시공원·녹지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·개축·재축 또는 대수선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3/100	
15. 제1호 내지 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/100	
16. 토지형질변경, 토석채취,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,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	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/100(점용면적 재산가액·제외금액)×5/100	
17.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	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/100	

※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원상복구 및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 연도의 점용면적 재산가액 전액을 점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

[별지 서식]

## 공원 · 녹지 점용허가 관리대장

관리번호				
점용목적				
위치			점용면적(m <sup>2</sup> )	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 : )		
구분	허가기간	점용률	점용료(원)	납부일
위치도				